
「2023.12월말 결산법인」

법인세 성실신고 안내

2024. 3.



인천지방국세청
NTS Incheon Regional Office

법인세과

'23.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확정신고 요약

- (신고개요) '23년 12월말 결산법인은 4. 1.(월)*까지 법인세를 신고·납부해야 하며, 3. 1.(금)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. 참고 1
 - * 올해는 3월 31일(일)이 휴일이므로 4. 1.(월)까지 신고
 - (건설·제조업 등 세정지원)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·제조·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. 참고 2
 -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4월 1일(월)에서 7월 1일(월)로 3개월 연장하고,
 -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,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(수) 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(목)까지 신속히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겠습니다.
 - 한편, 건설·제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여 지원하겠습니다.
 - (신고도움자료)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,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으로 제공하고 동업기업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우편·방문 신고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. 참고 3
 - 기업이 공제·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,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합니다.
 - 이러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는 거래일자, 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납세자가 도움자료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- 홈택스 「신고도움서비스」에서 다양한 유형의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
- (불성실 신고법인 검증)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, 공제·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. 참고 4

**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주시는 납세자에게 감사드리며,
'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'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드린 신고도움자료를
참고하시어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참고 1

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·납부 개요

- (신고대상) 올해 12월말 결산법인은 약 110.9만여 개, 4.4만여 개 증가
 -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,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4. 1.(월)까지 법인세를 신고·납부해야 함
 - 다만, 성실신고 확인대상* 법인이거나 연결납세 방식**을 적용받는 법인은 4. 30.(화)까지 신고·납부할 수 있음
 - *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른 ①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, ②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 사업자, ③②에 따른 법인전환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방식 등으로 인수한 다른 법인
 - **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(법인세법 § 76의8)
 - 이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, 세무대리인의 '성실신고확인서'를 같이 제출해야 함
- (전자신고)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통해 3. 1. (금)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음
 -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전자신고*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
 - * 법인 기본사항, 재무제표,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
 - 또한,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*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
 - * 간편신고서인 「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용 과세표준 신고서」만 작성·제출
- (납부) 납부할 세액은 4월 1일(월)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

■ 분할납부 요약 ■

구 분	내 용
분할납부 금액	■ 납부할 세액 1천 만원 초과 ~ 2천만 원 이하 :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■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초과 : 납부할 세액의 50% 이하의 금액
분할납부 시기	■ 일반기업 :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(이번 신고는 5. 2.까지) ■ 중소기업 :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(이번 신고는 6. 3.까지)

참고 2**건설·제조업 등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**□ **세정지원 대상**

- (건설·제조) **이자비용 비율 및 매출 감소 비율**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인 **건설·제조 중소기업** 선정 (전국 5.2만 개)
- (수출) **수출 비중, 매출 감소** 등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인 **수출 중소기업** 선정 (전국 1.1만 개)

■ 세정지원 대상 선정기준 ■

구 분	선정기준
건설·제조 중소기업	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건설·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①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 & '23년 매출이 30% 이상 감소 ②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 & '23년 매출이 50% 이상 감소
수출 중소기업	①·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할 것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% 이상인 중소기업 •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• 한국무역협회 선정 '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'·'수출의탑 수상기업' 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'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'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
□ **세정지원 내용**

- (납부기한 연장) 납부세액이 있는 법인은 납부기한 **3개월 직권연장**
 ※ 추가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,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(12. 31.까지 한시 면제)
- (환급금 조기지급) 환급 법인은 **10일 내(4. 11.까지) 환급금 신속 지급**

참고 3

신고 시 다양한 신고도움자료 제공

□ 신고도움서비스

- (개요) 기업이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,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**홈택스**를 통해 **개별특성**에 맞는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
- (화면 구성) 이용자가 편리하게 **활용**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탭(Tab) 형태로 구성

Ⅱ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홈택스 화면 구성 Ⅱ



Ⅱ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자료 Ⅱ

유형	제공 자료
주요 안내	· 주요지표 분석, 신고시 유의사항·절세 도움말 중 주요 안내사항
기업분석자료	· 법인 기본사항, 연도별 신고상황, 공제·감면 현황, 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수취 현황
신고참고자료	· 중간예납세액, 부가가치세·원천세 신고자료, 국고보조금 수취내역, 특정용도 신용카드 신용현황, 주주현황
신고 시 유의사항	· 개별분석·공통분석 자료, 업종별·계정과목별 유의사항
절세 도움말	· 법인별·업종별 절세도움말
세법 도우미	· 주요 개정 세법, 참고할 세법 규정

□ 주요 개선사항

- (도움자료 확대 제공)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다양한 신고도움자료 (신고 시 유의사항, 절세도움말, 세법도우미 등) **확대 제공***
 - * 신고도움자료 : ('23년) 392개 유형 → ('24년) 414개 유형(+22개 유형)
- (오류검증 서비스 확대) 납세자가 신고단계에서 **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확인**할 수 있는 신고오류 검증서비스를 **확대*** 적용
 - * ('23년) 38개 항목 → ('24년)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 오류 등 43개 항목으로 확대

- (구체적 자료제공) 개별분석 안내자료 내용을 추상적인 문구가 아닌 거래일, 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 제공

* 64개 안내항목 중 41개 항목에 대해 구체적 자료 제공

▮ 신고도움서비스 안내항목 정교화 사례 ▮

주요안내	기업 분석자료	신고 참고자료	신고시 유의사항	절세도움말	세법도우미
Ⅲ. 신고시 유의사항 신고시 유의사항 출력					
종 전			개 선		
특정시설물 이용권 취득 법인의 신고 시 유의사항			특정시설물 이용권 취득 법인의 신고 시 유의사항		
<p>귀 법인이 2023년 중 특정 시설물 이용권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유지 비용이 업무와 무관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			<p>귀 법인이 2023년 중 특정 시설물 이용권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유지 비용이 업무와 무관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		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정시설물이용권 종류 :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○ 취득일자 : 2023년 3월 1일 ○ 취득가액 : 320백만원 ○ 발행사업자 : 00스포츠센터 주식회사 		

- (취약분야 안내) 법인이 소유한 주택·요트·고가의 헬스회원권 등 관리 취약 분야에 대한 개별분석자료 제공

▮ 취약분야 개별분석자료 주요 내용 ▮

유 형	안내 내용
주택	· 사주 일가 등 법인 소유·임차 주택 사적사용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
요트회원권 · 고가헬스회원권	· 업무 관련성이 낮은 레저용 선박 및 사적사용 가능성이 높은 고가의 헬스회원권에 대한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
합병·분할	· 합병·분할 법인에 대하여 납세자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‘합병·분할 과세제도’의 주요 세무처리와 관련된 유의사항 사전 안내

□ 모바일 안내

- (신고도움자료) 중소기업이 신고도움서비스의 유용한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관련사항을 안내
- (공제·감면) '23년 고용이 증가하거나 기존에 공제·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세제혜택*을 안내

* 중소기업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고용증대세액공제,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

참고 4

사전안내와 연계한 정밀한 신고내용확인 실시

□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검증 실시

- (신고 전)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
- (신고 후)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, 공제·감면 적용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*을 실시할 계획

*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오류·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용 여부를 확인

- 탈루금액이 크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

▮ 주요 신고내용 확인 추정사례 ▮

내 용
① 고가의 헬스회원권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
②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
③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
④ 가상자산 매매차익·프로그램 사용료 수취분 법인세 신고 누락
⑤ 주택 양도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
⑥ 사주일가가 무상 사용한 법인의 임차주택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
⑦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소득금액 과소 신고
⑧ 실제 영위하는 업종과 상이한 업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부당 적용
⑨ 감면사업 내 결손금 미통산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 적용
⑩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밖으로 이전하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부당 적용

- ‘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’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하여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히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